신영자산운용

< 수시 공시 >

2009. 11. 18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
1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모투자신탁(주식)
2	신영마라톤그린밸류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2. 공시 사유 : 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

3. 주요 변경 내용 :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등 정정
(주식 및 국내외 주식 투자한도 60% 이상→70% 이상)

4. 변경시행일 : 2009. 11.18 .(수)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), 한국금융투자협회(http://www.kofia.or.kr), 집합투자업자(http://syfund.co.kr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